

지식재산권 증권화(Securitization)를 위한 탐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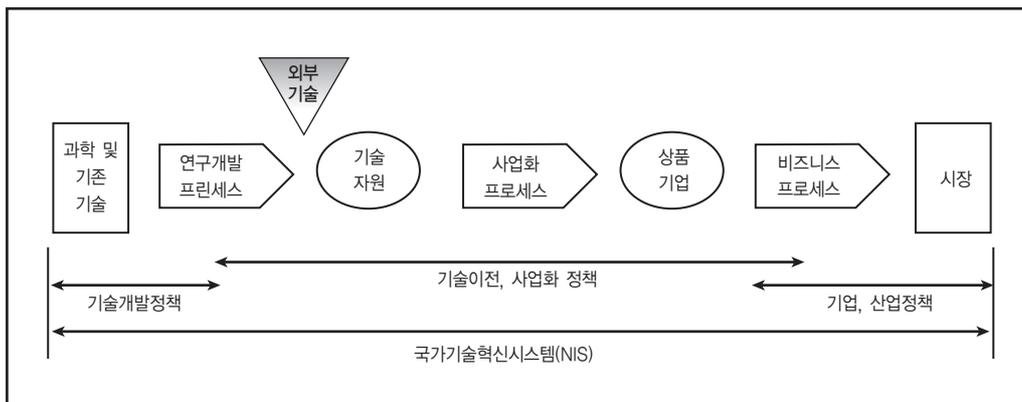
손수장*

I. 서론

연구개발에서 기술사업화에 이르는 기술의 가치사슬 순환구조가 원활이 이루어지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메커니즘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술개발, 사업화, 수익창출로 연계되는 순환구조에 있어서 사업화부문의 취약으로 기술의 부가가치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질적인 R&D 활동이 활발한 대학 및 출연(연) 등의 연구자들은 특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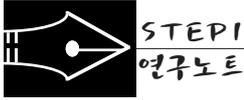
원시 사업화보다는 연구실적을 중시하여 휴면 특허의 축적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R&D의 투입대비 성과를 제고함에 있어서 기술 혁신성고가 경제성장으로 직결되는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선진형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 이미 기술개발, 사업개발, 그리고 시장개발 등을 병렬식으로 동시에 고려하여 계획하므로 기술개발에서 시장수요까지의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반면 후진형 기술사업화는 기술개발, 사업개발, 그리고 시장개발 등이 순차적

〈그림 1〉 기술사업화정책의 범위



자료: 산업자원부(2004)

* 기술경제연구센터 부연구위원(e-mail: sjsohn@step1.re.kr)



으로 고려되는 모형을 갖고 있어 상용화까지 이르는 시간이 상당히 길게 소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사업화 정책의 범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프로세스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이르는 과정으로 본다. 즉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술이전사업화가 고려되어 연구기획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술과 성장간의 관계 인식에 따라 정부는 R&D 투자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이러한 R&D 투자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과위의 2003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 R&D 사업 중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투자는 정부의 R&D 투자총액의 1%에 불과하여 아직까지는 지나치게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1980년 Stevenson-Wydler Innovation Act과 Bayh-Dole Act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기술사업화가 추진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1989년 기술이전촉진법의 시행과 함께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IPR) 공동관리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IPR관리적 측면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기술금융측면이다. IPR관리적 측면에서는 '특허풀' 또는 '특허플랫폼'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특허보유자들간의 Pool을 통한 특허관리 효율화 방안으로서, 주로 라이선싱 등 특허사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풀 또는 플랫폼의 수요자가 시장에서의 생산자이다. 기술금융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IPR 증권화이다. 이는 특허보유자들이 특허를 특수목적회사에 위임 또는 신탁하고 특수목적회사는 기술을

Pool하여 기술사업화자금 동원을 위해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증권화의 수요자는 시장에서의 투자자이다. 일반적인 자산기반 증권화 대상은 부동산 모기지, 자동차론, 신용카드 매출, 상업적 부동산매출, 프랜차이즈권, 그리고 항공좌석 등을 담보로 한 미래매출채권 등이 있다. 현 수준에서는 IPR 증권화는 다소 생소하며, 특히 특허의 증권화는 특허의 가치저하(유효기간 짧음), 미래수익의 측정 어려움 등 불확실성과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 관련 시장데이터 부족(미래 기술관련 예측 장애) 등의 이유로 금융시장의 작동원리를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PR 증권화는 선진기술시장에서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분야이다. 골드만삭스는 IPR 증권화를 통해 200백만불의 자금을 모았으며, 레만브러더스는 도미노 피자 브랜드 증권화를 통해 18.5억불의 자금을 모았다. 던킨도너츠의 경우도 브랜드가치의 증권화를 통해 자본확보에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들어 새로운 자산으로서 IPR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기업의 창업 및 확장을 위한 IPR 자산을 활용한 자금동원의 성장은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결국 IPR을 사업수단으로 하는 IP 상업은행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IPEG의 경우 유럽 최초의 IP 상업은행으로 라이선싱관리, IP 가치평가, IP의 이전 및 M&A 등 IP 관련 사업화 분야에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은행은 IP 가치의 상승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1998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



서 국내 자산유동화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다. 특히 2002년 법률개정에 따라 무체재산권도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IPR 증권화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슈 및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자산유동화의 이해

1. 자산유동화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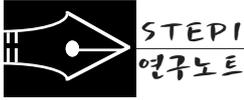
자산유동화는 대출채권,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 (illiquid asset)을 집합화(pooling)하여 그 자산을 기초로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즉, 유동화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가 자산보유자(Originator)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송영진, 2007).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의 신용도를 자산보유자의 신용도와 분리하여 자산의 신용도를 근거로 증권을 발행하고 상환하는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참여자의 정보, 자산의 양도를 포함한 유동화구조, 자산의 특성, 현금흐름의 확실성 그리고 자산관리와 관련된 내용 등이 투자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로 공시되어야 한다(김필규 외, 2006). 자산유동화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특징지어진다. 그 중 하나는 기초자산 보유자의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며, 또 다른 장점은 자금조달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는 점이다(한국은행, 2006).

자산유동화법 제2조에 의하면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하며,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이는 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다. 자산유동화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보유자, 유동화전문회사,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수탁기관, 그리고 주간사 등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자산가치 평가나 법률적 자문을 위해 신용평가사와 법무/회계법인이 지원역할을 한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발행비용, 평가 및 홍보비용,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발행비용은 사전 협의하에 결정되며, 주간사 수수료와 법무법인 수수료, 회계법인 수수료, 평가법인 수수료, 그리고 구조적 자문에 대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비용이나 발행분담금, 상장수수료 등 각종행정업무 처리 비용, 그리고 신문공고 등의 홍보비용은 실비적용 규칙을 따른다. 이외에 발생하는 관리수수료 등의 사후관리비용은 별도계약에 의해 작성된다.

또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시 신용보강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산유동화 거래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고 ABS의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ABS 발행시 대상 자산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완화하여 원리금 지급의 안정성 제고를 꾀한다. 신용보강의 수준은 해당 유동화 자산의 특성, 연체율, 대



〈표 1〉 ABS 이해관계자

| 관계자 | 역 할 |
|-------------------|--|
| 자산보유자 | 자산보유자(Originator)는 SPC에 대상자산을 매각함. 현행 법령상 자산보유자의 범위는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대외 신인도가 높은 기관 및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실질적인 유동화 증권 발행 수요가 있는 기관으로 한정 |
| 유동화전문회사 (SPC/SPV) |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ABS를 발행하는 형식적인 주체. SPC는 'Paper Company'로서 업무를 직접 영위할 수 없으므로 자산관리자 및 제3자에게 위탁하여야 함 |
| 자산관리자 | 자산보유자 또는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 |
| 업무수탁자 | 업무수탁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 일반적으로 업무수탁자는 우량은행이 대행하고 있으나 제3자에게 위임 가능 |
| 수탁기관 | ABS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 수탁기관은 유동화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보관 및 여유 자금의 투자를 대행하는 역할과 자산관리자의 도산 위험으로부터의 회피 기능,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 등을 수행 |
| 주간사 | 발행구조, 전략 수립 및 발행업무 주선 등 ABS 발행의 총괄 조정자 역할. ABS 발행과 관련 법률, 세무 상의 기초적인 검토하며 대상자산 Pooling, Cash Flow 분석 및 Structuring 업무를 수행 |
| 신용평가사 | ABS의 Credit Risk 평가하며,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 및 발행구조의 적절성, 대상자산의 가치, True Sale 여부, 양도인과 자산관리자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신용등급을 정하고 ABS가 발행된 이후에도 주요한 변동 사항에 대해 Check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역할 |
| 법무/ 회계법인 | 법무법인은 자산유동화의 발행구조에서부터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의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검토, 각종 계약서 작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

손을, 외부요인에 의한 현금흐름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 신용등급을 달성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신용보강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전문 보증기관보증 등 제3자에 의한 외부적 신용보강 (External Credit Enhancement)과 후순 위채 설정 등 대상자산 자체의 현금흐름을 이용한 내부적 신용보강 (Internal Credit Enhancement)으로 구분되며,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선택할 수 있다.

2. 자산유동화 관련 법령 및 조세

1) 자산유동화 관련 법령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법령은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1998.09.16 제정, 2005.07.29 일부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시행령」(2000.04.01 제정, 2004.03.17 일부개정),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1998.11.13 제정, 2000.12.12 일부개정) 등이 있으며 자산으로서 주택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유동



화회사법」(1999.01.29 제정, 2005.03.31 일부 개정)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1999.06.31 제정, 2004.03.17 일부개정)이 적용된다. 물론 이외에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 등이 요구된다.

자산유동화법이 갖는 특징은 법령의 속성이 축진법이자 조장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각종 특례를 인정하여 유동화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성격을 갖는다.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자산유동화는 SPV(SPC) 및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 SPV(신탁회사)가 다른 SPV(신탁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 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자산유동화 범위에 포함된다. 제2조에 제시된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기관은 SPV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로 한정한다. 자산유동화를 SPV 및 신탁회사를 매개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자산보유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당해 유동화의 기초자산을 자산보유자의 다른 자산과 개별의 것으로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자산유동화 관련 조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시행령 33조 4항에 따르면 SPC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법인이다. 단,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렌탈업을 의미/시설대여업은 제외)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세의 경우 SPC는 비과세 법인이 아니므로 다양한 절세 방안이 필요하다. 후순위 이자

지급 구조 활용하여 미지급 이자 비용을 발생하여 손비 처리하고 자산관리자의 Incentive Fee 지급에 의한 손비 처리 등이 대응방안으로 제시되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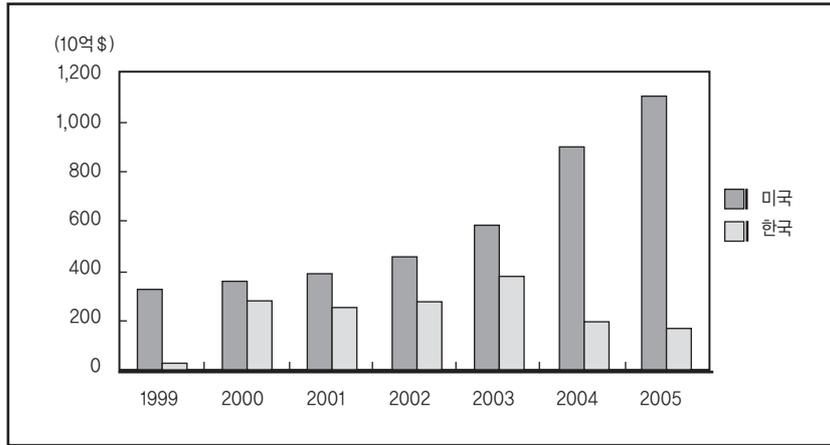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르면 SPV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가 규정되어 있어 SPV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3. 국내 자산유동화 현황

국내 자산유동화는 1998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정을 기반으로 활성화되었다. 1998년에 최초의 사모ABS가 발행되었으며, 1999년 공모ABS가 발행되었다. 1999~2000년 중에는 BIS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성 제고, 재무구조 개선, 부실채권 처분 등을 위해 ABS를 적극 활용하여 ABS발행규모가 급증하였다(한국은행, 2006). 2000년에는 최초의 주택저당유동화증권 MBS가 발행되었다. 또한 신용카드 유동화증권이 발행되기 시작하여 자산유동화시장을 선도하였다. 2001년에는 매출채권 유동화증권이 발행되었으며 미래매출채권 유동화 증권이 발행되었다. 2003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자산유동화 대상에 지식재산권 등의 무체재산권을 포함하면서 대상폭이 확대되었다.

미국과 한국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규모를 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기준 미국은 11,030억불의 규모를 보이는 데 반해, 한국은 1,630억불 규모로 거의 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자산유동화시

〈그림 2〉 미국과 한국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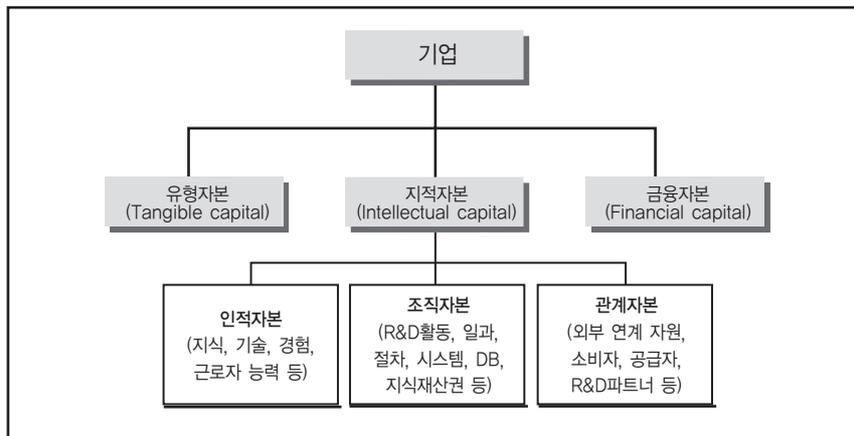
자료: 한국(금융감독원 자료), 미국(증권연구원 자료)

장 규모가 미국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데 반해 한국은 외환위기에 따른 부실자산 정리 등의 목적으로 2000년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최근들어 부실자산 안정화에 따른 채권발행유인감소와 채권시장의 미성숙 등의 이유로 증권화시장 규모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Ⅲ. 지식재산권 증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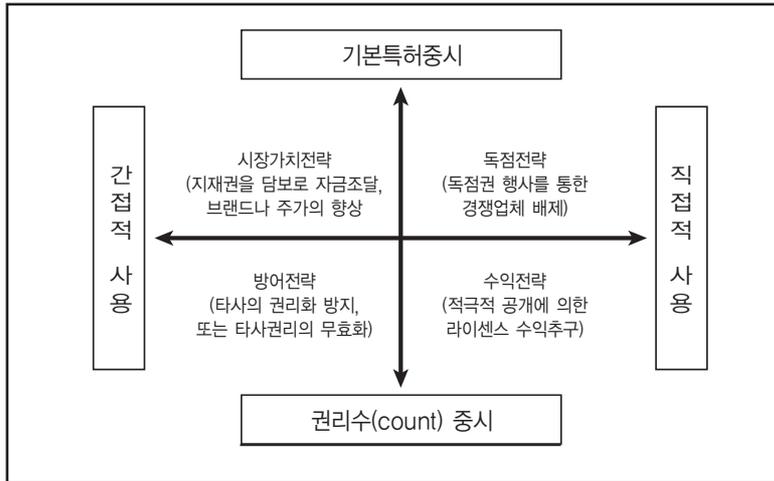
기업의 자본은 유형자본(Tangible capital),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 그리고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지적자본은 다시 인적자본, 조직자본, 관계자본으로 분리된다. 기업의 지식

〈그림 3〉 기업의 지적자본 원천



자료: EU Commission(2006)

〈그림 4〉 특허전략의 유형



자료: 知的財産管理委員會, 第1小委員會, “企業經營における 知的財産の活用—ナレッジマネージメントを中心とした 新しい知的財産マネジメントのあり方—” 『知財管理』 vol.51, no.9, 2001, p.1447 (권재열 외, 2006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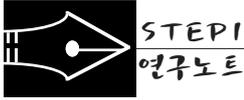
재산권은 조직자본에 속하는 자산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증권화는 기업의 지적자본을 금융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지적자본인 지식재산권, 특히 그 중 보유특허를 활용하는 전략유형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가능하다. 첫 번째 기준은 간접사용인지 직접사용인지에 따른 분류이며, 두 번째 기준은 기본특허를 중시하는지 특허규모를 중시하는지에 따른 분류이다. 이들 분류를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표로서 나타내면 지식재산권 증권화는 기술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본특허를 중시하면서 직접적인 생산기술이 아닌 기술을 활용한 자금동원이라는 간접적인 특허사용에 따른 시장가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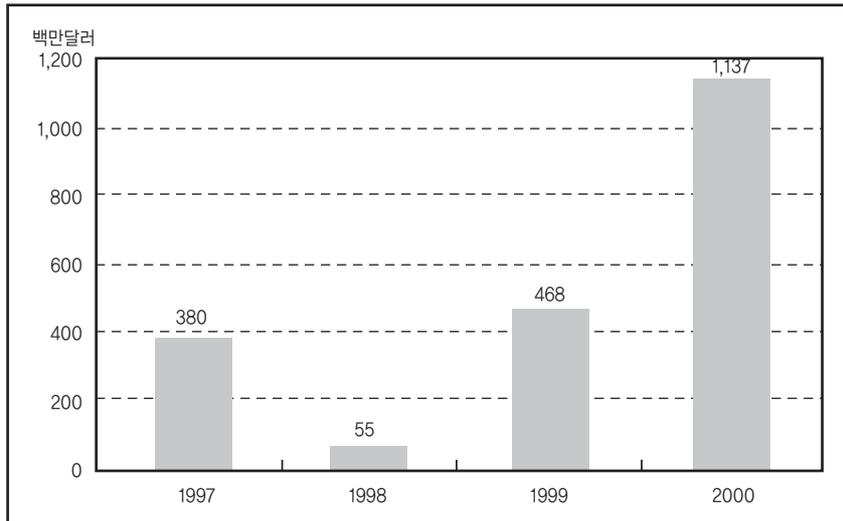
IP에 기반을 둔 증권화는 지식재산권의 가치 인식과 그의 경제성 인식에 따라 90년대 들어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전체 규모는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

지 않다. 엄밀하게 보면 지식재산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증권화가 시도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기존에는 저작권 분야에 한정해서 증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미국 가수 데이빗 보이의 '보이펀드'는 증권화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을 주축으로 한 IP 증권화의 규모는 1997년에는 380백만달러였으나, 2000년 들어 11억 3천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2003년에는 21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기존의 대부분의 지식재산권증권화가 영화, 음반 등 저작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 영역이 특허권으로까지 확대되었다.

1990년과 1998년 사이에 미국에서의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수익은 천억달러 이상규모로 개략적으로 연간 28%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700%까지 성장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전세계 특허의 자산 가치는 약 1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으



〈그림 5〉 IP기반 증권화 규모 추이



자료: Berman(2001)

며, 따라서 향후 지식재산 관련 증권화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무한하다.

최근 시도되는 특허증권화는 주로 의약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의약분야 기술이 증권화 대상으로 관심을 받는 것은 의약관련 기술이 갖는 두 가지 특징에 따른 것으로 추론된다. 우선 특허권의 유효기간(duration)이다. 다른 기술들에 비해 복제나 모방 등에 따른 기술확산에 이르는 시간이 일정기간 이상 확보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단일성이다. 모듈화되어가는 제품시장에서 사업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단일 특허로 단일 제품 생산이 가능한 특징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유동화를 위한 증권화 과정은 앞서 살펴본 자산유동화과정에 따른다. 단지 자산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라는 차별성만 갖는

것이다. 따라서 실체가 있는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평가 또는 신용보강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동화를 시도하는 것은 기술을 활용한 자금 확보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에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2002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해 무체자산의 자산유동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증권화는 새로운 기술금융 기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증권화는 유동성이 부족한 지식재산을 SPV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이를 자본시장으로 공급하여 투자대상으로 가공하는 방안이라 요약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자에게 효율적인 자금조달수단이 되어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IV. IPR증권화를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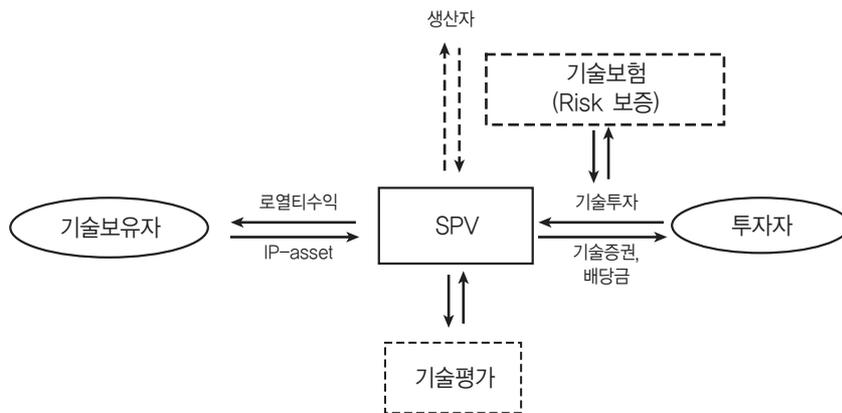
지식재산권의 증권화 과정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구도는 기술보유자와 SPV, 그리고 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술보유자는 자금동원을 위해 SPV에 기술자산을 위임하고 SPV는 ABS형태의 기술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한다. 또한 위임받은 기술을 생산자에게 라이선스 형태로 대여하여 기술료 수입을 얻게 된다. 이 기술료 수입의 일정부분은 기술보유자에게 로열티 몫으로 지불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배당금의 형태로 지불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일 구조 맥락에서 보면 매우 간단한 구조로 기술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일직 선상의 구조가 아닌 '기술평가'와 '기술보험'이라는 주요 기능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의 증권화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바로 이 두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식재산권이 갖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가치 뿐 아니라 시장성 측면에서의 가치도 함께 고려되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리스크를

갖는 기술의 불확실성을 보강해줄 수 있는 보험이 공존할 수 있어야 지식재산권 증권화가 성공적으로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금동원 수단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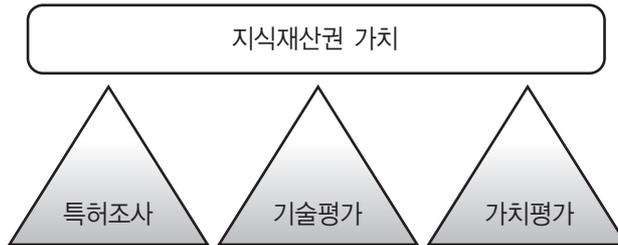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미래가치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효율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러한 효율성이 쉽게 복제되거나 다른 기술들에 의해 위협받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가치가 보다 높은 가치로 개발되고 새로운 버전으로 진화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기술의 가치평가는 '효율성', '리스크', 그리고 '진화와 개발'이라는 측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기술성'과 '시장성'이라는 요인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 등을 통해 기술자체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허조사가 이루어져야하며, 기술의 계보조사 및 전문가의견에 의한 향후 복제 및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한 기술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술시장의

<그림 6> IPR증권화구조



〈그림 7〉 지식재산권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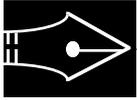
수요에 따른 현재가치 뿐 아니라 향후 미래성장 동력으로서의 미래시장에서의 가치 등이 고려된 시장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성과 시장성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신뢰성을 갖춘 평가모델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현재 이 분야에 대한 문제인식에 따라 2003년 9월부터 기업, 기술 및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TFFT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한국기술거래소,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등에서

실무적용중인 평가지표와 Inno-Biz 평가지표, 기업평가시스템의 평가지표에서 핵심요소 추출 및 추가적인 신규 핵심지표를 개발하였다. 대항목으로 기술경영및인적자원, 기술성, 시장성, 그리고 사업성 등 4개의 분류기준을 정하고 13개의 중항목과 46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된 표준모델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의 소지가 남아있으며 실질적인 작동 시스템 역시 아직까지는 논의의 소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모형개발 뿐 아니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는 평

〈표 2〉 기술가치평가 관련 법령

| 법령 | 관련내용 | 평가목적 | 평가유형 | 소관부처 |
|-------------------|--|-------------------------------------|----------|------|
| 기술이전 촉진법 | 기술평가전문기관(제8조) -기술신보, 발명진흥회, KISTI 등 8개 기관 (거래소포함시 9개) | 기술의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통해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기술가치 | 산자부 |
| 기술신용 보증기금법 | 기금의 업무(제28조) -기술평가(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평가) |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증여부 결정 | 기술성 사업성 | 재경부 |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평가기관(제2조) -중진공, 기보 등 16개 기술평가기관 -ITEP, 기보, 거래소, 기표원 등 7개기관 | 벤처기업 판정 기술의 현물출자시 가치 산정 | 기술력 기술가치 | 중기청 |
| 발명진흥법 | 발명평가기관(제9조) -기술성평가기관:생기원, 화학시험연구원 등 27개 -사업성평가기관: 중진공, 기보, 발명진흥회 등 10개기관 | 발명의 사업화 촉진 | 기술성 사업성 | 특허청 |
| 기술개발 촉진법 | 기술력평가기관(제4조)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기보 등 4개기관 | 기술개발결과의 산업화촉진 (기술담보대출 용지) | 기술력 | 과기부 |

자료: 산자부(2004)



가관련 법령의 일원화도 필요하다. 물론 평가의 대상이나 속성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큰 틀은 단일 규정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고려되는 '기술보험'의 경우 기술가치평가의 실패로 인해 실제로 시장에서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제이다. 기존 예금보험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예금보험공사규정에 의하면 수익증권, 증권사발행채권 등의 경우 보호대상제외예금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IPR 증권에 대한 보호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술보험인프라 마련을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권재열 외(2006), 「기술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숭실대학교.
김필규 외(2006), 「미국 자산유동화증권 공

시 제도의 현황과 국내 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

산업자원부(2004), 기술사업화 촉진 종합대책(안).

송영준 (2007), *ABS(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증권*, KIS 채권평가.

한국은행(2006),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Berman, Bruce M, *From Ideas to Assets: Investing Wisely in Intellectual Property*, John Wiley & Sons Inc. 2001.

European Commission(2006), *Reporting Intellectual Capital to Augment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in SMEs*.

METI(2003), "Challenges and Directions of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y in Japan".